#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 656 |
|---|---|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지난 2000.9.29일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부 개정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제10조 :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5일전까지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음을 삭제
○ 제15조 : 시장은 천재지변 및 기타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능할때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를 삭제
○ 제21조 :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권리를 양도.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삭제

3. 근거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 26조

붙 임 : 1.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5조.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이용허가) ①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이용일5일전까지 별지제1호 서식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특별한 시설을 설치한경우에도 또한같다<br>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자의 주소.성명.이용할시설.이용목적.이용기간 및 시간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br>③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허가할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이용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br>④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의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10조(이용허가)삭제<br>----------<br>----------<br>----------<br>----------<br>----------<br>----------<br>----------<br>----------<br>----------<br>----------<br>----------<br>----------<br>----------<br>---------- |
| 제15조(허가 취소) ①시장은 다음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br>1.천재 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br>2.공용.공익상 필요할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5조(허가 취소) 삭제<br>----------<br>----------<br>----------<br>----------<br>----------<br>----------<br>----------<br>----------<br>---------- |
|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 다만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삭제<br>----------<br>----------<br>---------- |

제 313 호 제 천 시 보 2000. 10. 27(금)

제천시 공고 제 2000-548호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0년 10월 27일

제 천 시 장

##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 정 취 지

○지난 2000. 9. 29일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부 개정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제10조 :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이용일 5일전까지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음을 삭제

○제15조 :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으로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를 삭제

○제21조 :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삭제

4.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0년 11월 15일까지 제천시청 건전생활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640-6387, 638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의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개정 방침 결정문

☐ 조 례 명 :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난2000.9.29일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부 개정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제 10조 :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5일전까지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음을 삭제(청소년수련시설 자유이용에 대한 제한및 운영에 대한 비합리성)

제 15조 : 시장은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능할때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를 삭제(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시 본조례(제15조)와 상충됨

제 21조 :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권리를 양도.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 를 받았을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삭제(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시 본조례와 상충됨)

☐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27조, 제36조
" 시행령 제3조, 제36조

☐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발췌 : 해당없음

⑥ 시 ·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을 문화체육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제26조의2 (수련시설 허가의 요건)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수련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중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26조의3 (수련시설 운영책임자)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26조의4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제20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5.12.29]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제28조 (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등)

① 수련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수련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등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9조 (시정명령)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운영기준 및 안전기준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0조 (금지행위)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유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 · 의 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그 승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34조의2 (수련시설의 휴지 · 폐지)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휴지하였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영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35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 · 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청소년이용시설)
① 수련시설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안에서 수련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청소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등은 그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련거리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37조 (민간인의 참여조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 · 금융 · 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 · 금전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할 수 있다.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 인가 · 해제 · 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 서의 행위의 허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3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제33조의2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수련시설에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학식이나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그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96·6·29]

제34조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활성화 및 수련거리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수련시설중에서 시범수련시설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개정 93·3·6]

1. 시설·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개발원등에서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기타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3·3·6]

제35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 위탁기간등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93·3·6, 96·6·29]

1.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단체(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경우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한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그 수련시설이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표수련시설인 경우에는문화체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④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2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96·6·29]

제36조 (수련시설의 이용) ①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3·3·6]

1. 법인·단체 또는 직장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등에 제공하는 경우
2.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편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 사무실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실등으로 제공하는 경우